



대한건설협회

수신자 외국인력 고용업체 대표이사

제목 2023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

1. 고용노동부 ‘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시달(외국인력담당관-3124, 2023.9.1.) 및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사항 알림(외국인력담당관-2849, 2023.8.10)와 관련입니다.

2. ‘2023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문’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, 외국인력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‘23.9.11(월)~9.26(화)까지 공사현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 2 참조)

※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(붙임 4 참조)

※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: 1,431명

3. 또한, 이번 신청시 주요변경 사항은 **협회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현장별 고용허용한도가 2배로 상향되었음**을 안내하오니 기존 내국인 구인노력 인원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허가서를 신청하실 업체는 ‘내국인 구인노력’을 증가하여 워크넷 홈페이지에 다시 올리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☑ 협회 건의 반영 사항

• 현장별 고용허용한도 2배 상향

연평균 공사금액	고용한도	
	변경 전	변경 후
15억원 미만	5명 (계수 미적용)	10명 (계수 미적용)
15억원 이상	공사금액 × 0.4	공사금액 × 0.8

※ '23.9.1 시행(금범 신청분('23. 4차분 신청부터 적용)

4. 아울러, 귀사에서 현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실 고용허가서 신청 첨부서류와 우리 협회에 제출하실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 첨부서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원수급인과 협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구 분	고용허가서 신청시 첨부서류 (현장관할 고용센터에 제출용)	1달 후(고용허가서 발급받은 후) 사증발급 업무대행 신청시 첨부서류 (대한건설협회에 제출용)
원수급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도급 계약서 사본 1부. (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이 표기되어야 함, 별도표기 없으면 공동수급협정서 첨부) ※ 필요사유 : 고용센터에서 현장별 고용가능인력 (원도급 계약금액 × 0.8 이내) 확인용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○ 외국인력현황표 사본 1부.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.
하수급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.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○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. ○ 건설업등록증 사본 ○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+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

※ 세부내용 : 붙임3 참조

5. 고용노동부가 다음 행정사항의 안내를 요청 해 오에 따라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〈 고용노동부 안내요청 사항 〉

1. 신규 고용허가 신청 시 '수요조사표' 작성' 요망

-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고용허가서 수요를 예측코자 신청업체가 **EPS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신청시 '25년도 신청예상 인원을 입력토록** 하고 있으니, 신청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EPS 및 고용센터에 작성하신 자료를 **우리협회(메일(sik619@cak.or.kr) 또는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(010-5047-7934)에 문자로 송부)로 송부해** 주시면 **외국인업무에 참고하도록** 하겠습니다.

< 수요조사표 형식(예시) >

구분	총 필요인원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신규	7명	4명	1명	0명	2명
재입국특례	2명				

* (안내문구) ▲ 동 수요조사는 '24년 신규 고용허가 쿼터 결정, 분기별 쿼터 배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신청 여부와 무관하오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예상 인원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▲ 신규 고용허가는 분기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예상 인원을 기입하시면 총 필요인원이 자동 산정되며, 채용계획이 없는 경우 모두 0명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.

※ 붙임 1-3(고용노동부 EPS상 '24년 수요조사 계획) 참조

2.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기간 변경

- 보증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적용기간 변경 : (기존) 3년 → (변경 후) 4년 10개월

※ 붙임 8-1, 8-2(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변경내용 안내) 참조

〈 담당자 연락처 〉

- 담당자 :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유승식 부장
- 전 화 : 02-3485-8302, 010-5047-7934
- E-mail : sik619@cak.or.kr

대한건설협회장



수신자

부장

유승식

팀장

2023.09.04
신황호

협조자

시행 외국인력고용지원팀-158 (2023.09.04.) 접수

우 0605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, 7층(건설회관) / <http://www.cak.or.kr>

전화 /전송 02-518-9963 / sik619@cak.or.kr / 공개